



## 노스 캐롤라이나 상무부

고용 안전부

사무실 주소 및 전화 번호를 여기 입력하십시오

### 퇴직금 결정

XXX - XX -

소셜 시큐리티 넘버

클레임 종류 / 발효일

성 / 이름 / 중간이름

연금 발효일 (월, 일, 연)

GS 96-14 .2 C 개인에게 지급해야하는 급여액은 본 법 제 3304 (a) 항 (15) 절에 명시된대로 감소되어야합니다. 이 항은 사회 보장 퇴직 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A. 원고의 진술

나는 기본 기간 고용주, ( )가 제공 한 시스템 또는 철도 퇴직 법에 의거하여 매월 \_\_\_\_\_ 의 금액으로 이전 직장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연금액 증명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보고한 연금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나의 월급은 \_\_\_\_\_ 입니다.

**연금액 증명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본인은 위에 명시된 은퇴 지불 정보가 본인의 지식과 믿음에 충실한 것임을 맹세합니다. 본인은 퇴직금 지급 상태의 변경 사항을 고용 안전부에 통보하는 것이 본인의 책임임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또한 퇴직금 정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 실업 수당과 사기로 기소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날짜

원고의 서명

#### B. 결정

원고는 노스 캐롤라이나 주 고용 안전법의 GS 96-14.2 (C)에 명시된 퇴직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주간 연금액 \_\_\_\_\_ 은 \_\_\_\_\_ 부터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어 실업한 어느 주에 지불되어야 하는 실업 보험 급여에 대한 원고의 주간 수혜액인 \_\_\_\_\_ 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결정일

항소 만료일

이 결정은 고용 안전부에 항소가 제기되지 않는 한 최종적 결정입니다. 항소는 결정이 우편으로 발송된 날로부터 삼십(30)일 이내에 제기 되어야 합니다. 직접 항의는 해당 지역 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의 주소로 우송된 항의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 결정은 모든 항소문에 첨부하십시오.